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2820호
----------	--------

제출년월일 2021. 7.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가.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2021.12.31.)
나. 어린이 급식소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를 강화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나. 수탁기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국 식품 관련 기관, 단체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라. 위탁내용 : 김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위탁사무 :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부모)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지원
 -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운영방식과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관련 컨설팅 지원
 -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정보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등

바. 위탁조건

- 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함
-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김포시에서 제시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충실히 수행
- 수탁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전문인력 확보

3. 관계법령

-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4. 예산수반사항

- 가. 사업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예산액(2021년) : 1,155,000천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단위:천원)

사업명	합계	예산구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155,000	577,500	86,625	490,875	

소관 실·과·소		식품위생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팀장 직위·성명	음식문화팀장 고미영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보건주사보 전경은(☎223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1,155,000	1,212,750	1,212,750	1,273,388	1,273,388	6,127,276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운영비	377,772	396,661	396,661	416,494	416,494	2,004,082
	인건비	711,145	746,702	746,702	784,037	784,037	3,772,623
	직무수행경비	12,000	12,600	12,600	13,230	13,230	63,660
	자산취득비	21,083	22,137	22,137	23,244	23,244	111,845
	여비	33,000	34,650	34,650	36,383	36,383	175,066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기획담당관 협의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경제문화국 식품위생과 과장 심인섭 팀장 고미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664,125	697,331	697,331	732,198	732,198	3,523,183
국비	577,500	606,375	606,375	636,694	636,694	3,063,638
도비	86,625	90,956	90,956	95,504	95,504	459,545
세 출	1,155,000	1,212,750	1,212,750	1,273,388	1,273,388	6,127,276
국비	577,500	606,375	606,375	636,694	636,694	3,063,638
도비	86,625	90,956	90,956	95,504	95,504	459,545
시비	490,875	515,419	515,419	541,190	541,190	2,604,093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6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